

탄자니아 민관협력사업 예산 적격증빙자료 개선안

2016년 7월 4일
하트하트재단 탄자니아 지부
이은정 지부장

1. 개요

- 1) 목적: 탄자니아 민관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회계관련 업무논의
- 2) 배경
 - o 2016년부터 민관협력사업이 외교부 보조금사업으로 전환되며 회계 지침이 변경됨
 - o 변경된 지침 세부검토 결과, 대부분의 내용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나, 회계관리 지침 중 적격증빙 관련 변경된 내용이 현지에서 수행하기 다소 무리가 있음이 대두됨
 - o 코이카(본부) 문의 결과,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코이카 탄자니아 사무소의 동의 및 승인으로 회계관리지침 중 일부를 현지 사정에 맞게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 3) 논의 및 요청내용
 - o 예산 적격증빙 관련 현황파악 및 보고
 - o 개선안 제언 및 현지 사무소(코이카 및 하트하트재단) 간의 업무 공유 및 이해
 - o 코이카 탄자니아 사무소 측 공문발행 요청

2. 2016년 회계지침 변경 주요내용

- 1) 적격증빙의 정의 (첨부1. “2016년도 민관협력사업 보조금 전환 설명회-발표자료” 참고)
 - o 국내·외 사업현황 반영한 사업비 지출 적격 증빙 내역 및 허용여부

연번	구분	국내(₩, \$)	국외(\$, 현지화)
1	세금계산서	○	○
2	현금영수증	○	○
3	사업비 전용통장 결재, 신용카드(체크카드) 매출전표	○	○
4	간이영수증	X	△
5	백지영수증	X	△
6	현금지급증	X	△

[표1. 적격증빙 허용여부]

- ○: 인정, △: 조건부 인정, X: 불인정

- o 간이영수증의 정의: 매도인의 상호, 주소, 연락처는 프린트 되어있으나, 그 외의 거래에 관련된 정보(거래일자, 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및 매도인의 서명이 수기로 기재 되어 있는 영수증을 의미함
 - 간이영수증 법적 증빙 한도 조정
 - 간이영수증은 국외 현지에서 미화 또는 현지화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지출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법적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거래처에 분할하여 수령한 간이영수증의 경우, 합산금액이 10만원을 넘을 수 없음
 - 간이영수증의 잘못된 예:
 - 동일 항목(같은 날짜에 같은 거래처에서 구매)을 10만원 미만의 간이영수증으로 나눠 여러 개의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을 제출한 경우는 해당 금액 전액 불인정
 - 필수기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간이영수증의 경우는 해당 금액 전액 불인정
 - 간이영수증의 필수기재사항: 매도인의 상호, 주소, 연락처는 프린트 되어 있으나, 그 외의 거래에 관련된 정보(거래일자, 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 및 매도인의 서명이 수기로 기재 되어 있는 영수증을 의미함.
단, 거래에 관련된 정보 중 금액의 합계를 문자로 기재한 것에 한함
(예: 합계금액이 \$50인 경우, fifty dollars only로 기재)
- o 백지영수증의 정의: 백지영수증은 국외에서 간이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와의 구매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수증으로 법정금액 3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동일 항목(같은 날짜에 같은 영세사업자로부터의 구매)을 3만원 미만의 백지영수증으로 나눠 여러 개의 백지영수증으로 증빙을 제출한 경우 합산 금액이 3만원을 넘을 수 없음
 - 백지영수증의 잘못된 예: 필수기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백지영수증의 경우는 해당 금액 전액 불인정
 - 영세사업자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상설가게 형태가 아닌 상호가 없는 노점상 등의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이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경우로 한함
 - 백지영수증의 필수기재사항: 거래에 관련된 정보(거래일자, 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및 매도인의 성명 및 서명이 수기로 기재 되어 있는 영수증을 의미함. 단, 거래에 관련된 정보 중 금액의 합계를 문자로 기재한 것에 한함(예: 합계금액이 \$10인 경우, ten dollars only로 기재)

2) 탄자니아의 영수증 종류 및 적격증빙 기준 부합여부

연번	영수증 종류	특징 및 사용처	적격증빙 부합여부
1	일반 전자영수증 	- o 업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전자 영수증으로 구매내역, 단가, VAT 등이 포함되어 있음 - o 음트와라 같은 소도시 및 시골 지역 소재 업체에는 발급이 불가능 함	o 코이카 적격증빙에 해당 함
2	국세청 발행 전자영수증 	- o 정부에서 일정 규모이상의 업체에게 의무적으로 발행하게 하는 전자영수증 - o 주로 총금액 및 세금내역이 기재되며, 구매한 물품의 단가 및 상세내역은 보이지 않음 (업체에 따라 구매물품, 단가 등 구매정보가 간략하게 표시 될 수도 있음)	o 코이카 적격증빙에 해당 함
3	일반 영수증 1 	- o 간이영수증에 해당 - o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간단한 구매내역 및 총 금액이 숫자와 문자로 작성되며 매도인의 서명이 포함 됨	- o 적격증빙 불인정 - 사유: 구매물품의 단가 및 수량표시에 한계가 있음
4	일반영수증 2 	- o 간이영수증에 해당 - o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구매물품에 대한 수량, 단가, 총 금액이 숫자로 표기 됨 - o 매도인의 서명 및 총합산액 문자 기재는 없음	- o 적격증빙 불인정 - 사유: 영수증의 특성상 구매 총금액 문자 및 매도인의 서명이 기재되지 않음
5	백지 영수증 	o 영세업체에서 발행하는 백지 영수증으로 구매내역, 수량, 단가, 총금액 표기되며 업체의 직인이 찍힘	o 한화 3만원 미만 한시적으로 인정. 단 필수 기재사항인 매도인 성명 및 서명란이 없음

[표2. 현지영수증 종류 및 코이카 적격증빙 기준부합여부]

3) 현지상황 분석결과 문제점 공유

- 현지 사업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수증은 상기[표2] 3~5번에 해당하는 간이 영수증, 백지영수증 형태임
- 2016년 회계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조건부로 간이영수증 및 백지영수증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해당 조건사항이 현장에서 시행하기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
 - 문제점 1: 간이영수증의 경우 영수증 종류에 따라 매도인의 서명 및 총합산액이 문자로 기재되기가 어려움
 - 문제점 2: 음트와라 지역 소재의 대부분의 업체는 현재까지 대부분 간이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으며,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음.
따라서 간이영수증 사용한도를 한화 10만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탄자니아 음트와라 사업장 경우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규정임
 - 문제점 3: 시골지역의 대부분은 영세업체로 백지영수증을 쓰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제한된 금액이 다소 낮아 사업 수행 시 어려움이 예상됨

3. 개선안 제언

연번	코이카 측 적격증빙 기준	개선안 및 제언
1	○ 간이영수증 필수기재사항 충족 - 매도인의 상호, 주소, 연락처는 프린트 되어 있어야 함 - 거래일자, 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 - 매도인의 서명 수기로 기재 - 금액의 합계를 문자로 기재	○ 간이영수증의 필수기재사항 일부적용 허용 - 매도인의 서명 및 총합산액 문자 기재는 영수증의 종류에 따라 기재•미기재 될 수 있음 - 단, 거래일자, 상품명, 수량, 단가, 총금액은 반드시 표기
2	○ 간이영수증 한화기준 구매합산금액 10만원 미만 사용	○ 탄자니아의 대부분의 업체가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금액 제한 해제 또는 한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단, 한화기준 단가 1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은행 송금증 또는 전자영수증과 함께 비교견적을 제출함
3	○ 백지 영수증 필수기재사항 충족 및 한화기준 합산금액 3만원 미만사용	○ 백지 영수증의 필수기재사항 일부적용 허용 - 매도인의 서명 및 총합산액 문자 기재는 영수증의 종류에 따라 기재•미기재 될 수 있음 - 단, 거래일자, 상품명, 수량, 단가, 총금액은 반드시 표기 - 매도인의 성명기재 대신, 매도인의 직인으로 대체 할 수 있음 ○ 한화기준 합산 금액 10만원미만으로 제한액 상향 조정

[표3. 개선안]

4. 지부의견

- 1) 하트하트재단 탄자니아 지부 소재지인 음트와라(Municipality)는 인구 약 10만명¹⁾의 소도시로 지역경제가 활발하지 않으며, 대형업체보다는 중소기업의 업체가 대부분인 지역임. 중소 영세업체가 많은 동 지역에서 전자영수증 위주로 사업을 진행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음.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코이카 탄자니아 사무소의 자문 및 개선안 승인을 구하는 바임
- 2) 코이카 회계 외주업체(안진법인)에 공문첨부가 원칙임으로, 코이카 탄자니아 사무소의견(승인사항 등)을 공문으로 송부바람

/끝/

1) 참조 사이트: <http://www.citypopulation.de/php/tanzania-coastal-admin.php?adminid=0905>